

1. 개정 이유

민감·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「환경보건법」이 개정(‘24.3.19 공포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환경보건이용권 신청 및 발급을 위한 서식 규정 신설(안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)

환경보건이용권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 서식을 규정하고, 대리인이 신청시 필요한 위임장 서식을 규정

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환경보건이용권 신청 및 발급) ① 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.

② 영 제13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.

③ 영 제13조의6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의4서식과 같다.

별지 제1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환경보건의용권 발급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2쪽 중 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 이내
신청인	성명(국문)	주민등록번호	
	대상유형		
	1. [] 기초생활수급자 [] 차상위계층		
	- [] 13세미만 어린이 [] 65세이상 노인 [] 임산부		
	- [] 환경오염취약지역 거주자		
	2. []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()		
	주소		
	휴대전화 번호		
	[] 문자서비스 수신동의		
	전자우편주소		
	[] 전자우편 수신동의		
통지방법	[] 서면 [] 문자메시지 [] 전자우편주소(E-mail)		
「환경보건법」 제20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보건의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.			
		년 월 일	
신청인		(서명 또는 인)	
환경부장관		귀하	
첨부서류	제2쪽 참조	수수료 없음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 제13조의5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- 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 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) - 건강영향조사 결과지 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)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3. 신청인의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	수수료 없음
담당자 확인 사항	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 2.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명서 사본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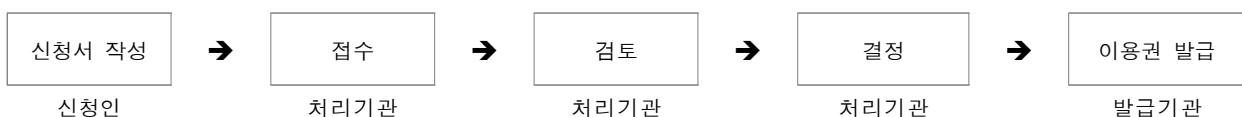
작성방법

1. 신청인란은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, 대상유형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13세 미만 어린이, 65세 이상의 노인 및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,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,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및 거주요건 등에 해당하는 사람,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(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 제13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)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.
2.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유의사항

1. 환경보건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. 환경보건이용권을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3. 해당연도의 환경보건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.
4.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, 환경보건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(필수)

항 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주소, 대상유형, 결과통지방법, 핸드폰(연락처), 전자우편주소,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	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	<u>5년</u>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환경보건이용권 신청·선정·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		
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([] 예, [] 아니오)		
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(선택)

항 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회원 계정정보(ID, 비밀번호),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(CI), 회원가입동의 여부	- 환경보건이용권 사용 관련 이력관리 - 환경보건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관리	<u>5년</u> , <u>회원탈퇴 시</u>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환경보건이용권 신청·선정·지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부가서비스 제공은 제한을 받습니다.		
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([] 예, [] 아니오)		

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(필수)

제공받는자	개인정보 제공목적	개인정보 제공 항목	보유 및 이용기간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	- 이용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 -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자격확인 - 환경보건이용권 한도금액 부여	성명, 주민등록번호,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여부	<u>5년</u>
※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환경보건이용권 신청·선정·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			
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([] 예, [] 아니오)			

■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

항 목	개인정보 처리목적	보유기간	수집근거
<u>주민등록번호</u> <u>외국인등록번호</u>	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	<u>5년</u>	- 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 제22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
※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			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,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환경부장관 귀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2(환경보건이용권 신청 및 발급) ① 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.</u> <u>② 영 제13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&#8231;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.</u> <u>③ 영 제13조의6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의4서식과 같다.</u>